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의무소방원 복무 중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자에 대하여 인사처리 규정을 신설하고 이와 연계된 직권면직 관련 조항을 개선하며, 현역병·의무경찰은 사망·공상 심사에 관한 사항이 법률·대통령령에 규정되어 ‘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한 것과 달리, 의무소방원은 훈령(소방청 훈령 제66호)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신설하고, 사망·상이 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개선하여 의무소방원의 타 兵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복무 중 신체·정신 건강상 이유로 복무가 부적합한 자에 대한 직권면직규정 개선 및 부적합한 자의 인사처리 규정 신설(안 제27조, 안 제27조의2)
- 나. 사망·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한 소방기관의 장 소속 보통공사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0조의2)
- 다. 재심사를 위한 소방청 중앙공사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0조의3)

- 라. 재심사의 요건, 재심사의 재심사, 청구기한 신설(안 제30조의4)
- 마. 중앙·보통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30조의5)
- 바. 사망·상이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개선(안 제46조)

대통령령 제 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병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결과가 5급이나 6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제27조의2에 따라 직권면직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소방청장은 의무소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병역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체등급이 5급 및 6급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4호 및 제13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한 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처분 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 0. ~ 2.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경이 통보된 사람을 직권면직 하여야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소방활동 보조·기타 복무수행 중 발생한 의무소방의 사망·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보통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통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⑤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소방공무원과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방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⑦ 공무원이 아닌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⑧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⑨ 보통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소방기관의 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정서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1. 심사 결과 및 이유
2.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 기간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무수행 중 발생한 의무소방의 사망·상이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중앙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중앙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④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통심사위원회"는 "중앙심사위원회"로,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으로, "심사"는 "재심사"로 본다.

제3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중앙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

통심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을 재심사해야 한다.

1. 당사자가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2. 당사자의 재산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심신상실 중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3.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경우 당사자, 당사자
의 재산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5에서 "당사자
등"이라 한다)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중앙심사위원회
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해당 심사 또
는 재심사에 대한 결정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청구
해야 한다.

제3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이하 "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
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이
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등과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은 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
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상심사위원회
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
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사상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
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는 위원이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중 "급여금은"을 "급여금을 받을 권리는"으로,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
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로 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제30조의4에 따라 중앙
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
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에 따라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급여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2년간 그 시효기간을 연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급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개정 전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71조에 따라 재심을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시효에 관한 특례)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망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직권면직) ① (생략)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무소방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군통합병원 또는 국·공립병원장이 발급하는 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u><후단 신설></u> <u><신설></u>	제27조(직권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병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결과가 5급이나 6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제27조의2에 따라 직권면직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부적합한 자의 인사처리) ① 소방청장은 의무소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

<신 설>	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1.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병 역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체등급이 5급 및 6급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신 설>	2.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 환복무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 는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제4호 및 제137조제4항부 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 리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 무 해제를 요청한 후 국방부장관 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병역처 분 변경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처분 변경이 통보된 사람을 직권면직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조의2(보통공사상심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① 소방활동 보조·기타 복무수행 중 발생한 의무소방의 사망·상 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

<신 설>	하여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 통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② 보통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③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 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④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 통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통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 설>	⑤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 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통심사위원회 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보통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⑥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소방 공무원과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방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 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 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 가 되도록 한다.
<신 설>	⑦ 공무원이 아닌 보통심사위원회 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신 설>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⑧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 설>	⑨ 보통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⑩ 소방기관의 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정서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1. 심사 결과 및 이유 2.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 기간
<신 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 설>	제30조의3(중앙공사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무수행 중 발생한 의무소방의 사망·상이에 관한 사항을

<신 설>	재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② 중앙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③ 중앙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신 설>	④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통심사위원회"는 "중앙심사위원회"로,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으로, "심사"는 "재심사"로 본다.
<신 설>	제30조의4(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① 중앙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심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을 재심사해야 한다. 1. 당사자가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2. 당사자의 재산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u>경우(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심신상실 중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u>
<u><신 설></u>	<u>3.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u>
<u><신 설></u>	<u>② 제1항에 따라 중앙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경우 당사자, 당사자의 재산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5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중앙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u>
<u><신 설></u>	<u>③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해당 심사 또는 재심사에 대한 결정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u>
<u><신 설></u>	제30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u>①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이하 "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u>

	<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u>
<u><신 설></u>	<u>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등과 공동권리자인 경우</u>
<u><신 설></u>	<u>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
<u><신 설></u>	<u>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u>
<u><신 설></u>	<u>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u>
<u><신 설></u>	<u>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은 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상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u>

<신 설>

<신 설>

제46조(급여금의 청구)

급여금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하되,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③ 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상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6조(급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① 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
----- 5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제30조의4에 따라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시효

<신 설>

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급여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2년간 그 시효기간을 연장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운영지원과	
연 락 처	(044) 205-7036